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